

##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채황석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 I. 서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3.2%이다. 2015년의 2.7%와 비교하면 0.5%p 증가하였다. 2021년 외국국적 외국인주민은 165만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2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인구 비중도 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귀화자와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이 있는 인구도 2020년과 비교하여 2040년에는 각각 2.4배, 2.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이주민의 규모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4.14.).

한국사회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은 중국동포로,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에 의하면, 중국동포 31.4%, 중국 11.5%, 베트남 10.7%, 태국 8.8%, 미국 7.2% 등의 순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동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이들 중국동포의 한국방문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다(김기태 외, 2020). 한국방문 초기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보따리 장사로 체류하였다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에는 3D 업종의 단순

## 2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노무 종사자로 유입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체류자격과 직업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오정은 외, 2016).

국내 체류외국인의 31.4%가 중국동포이고, 중국동포의 80%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한다. 또한 외국인의 21.0%가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 거주 외국인의 45.7%는 중국동포로,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3개 자치구에 과반 이상이 체류한다(행정안전부, 2022). 이처럼 중국동포는 국내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이면서, 서울거주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및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한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서울지역 중국동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 지난 10년간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중국동포의 우리나라 이주배경과 재외동포 체류정책 변화를 정리하고,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일자리 특성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한다.

## II. 중국동포 한국이주와 체류정책 변화

### 1. 중국동포 한국이주 배경

1953년 중국정부의 민족구분 사업으로 중국동포는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공식 인정받아, 중국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를 경작하며 농업에 주로 종사하였다(김판준, 2014; 허명철, 2012). 중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농민의 도시이주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주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

서 중국동포 거주지역도 인구이동이 낮아 지역적 안정성이 높았다(박광성, 2006; 설동훈, 1998). 특히 농촌거주 농민들은 중국동포로 구성된 마을에서 생활하고, 도시 거주 중국동포는 연변지역 도시와 같은 집거지역 도시에서 주로 생활했다. 그렇다보니, 타 민족이 생활하는 지역에 중국동포는 적었으며, 타 집단과 섞이면서 생활하기보다는 주로 집거지역에 모여 결속을 다지면서 생활했다(권태환, 2005). 199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중국동포는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97%가 거주하였으며, 1차 산업에 53%, 2차 산업에 22.0%, 3차 산업에 25%가 종사하였다(설동훈, 1998).

<표-1> 중국동포 이주와 이주지역별 유인 요인

원 거주지	이주지역	유인 요인	이주 연령대	직업
동북3성	중국 연해지역	일본, 한국기업 취업, 서비스업	청년, 중년, 장년	관리직, 서비스업
	러시아	중국시장 형성 소매업, 교역	중년, 장년	소상인
	일본	기술직 부족 유학 및 취업	청년, 중년	기술, 전문직
	한국	단순노동시장 형성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중년, 장년	단순노무직, 서비스업

자료 : 김판준(2014), 중국동포의 한국이주 및 체류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32

그렇지만,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및 산업화정책으로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던 중국동포사회는 변화를 맞이한다. 사유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됨에 따라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도시로 이주가 활발해지면 농촌에서는 빈곤 탈출을 위한 이주가, 도시에서는 저소득 및 낮은 사회적 지위 계층의 이주가 진행되었다(김판준, 2014; 설동훈, 1998; 심의섭, 1998).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던 중국동포들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일본 기업투자가 집중된 중국 연해지구로 이주, 동북3성

#### 4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인접국인 러시아와 교역을 위한 이주, 일본 유학 및 취업을 위한 이주, 그리고 한국으로 노동이주 등 중국동포의 글로벌한 이주가 확산되었다(김판준, 2014). 이동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밀물과 같이 단시간 내에 중국동포의 급격한 이주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중국 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중국동포가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이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중국동포의 한국이주 배경으로는 중국동포 거주지역의 경제적 낙후와 일자리 부족 등 경제적 요인, 한중관계 변화 등 정치경제적 요인, 그리고 언어와 민족적 동질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김판준, 2014; 오정은 외, 2016). 1970년대 말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거주지역인 동북3성은 중국 주변부에 위치하여 경제발전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였다. 농촌지역 탈농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함께 빈곤 탈출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었고, 한국도 중국동포의 이주지역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이더라도 중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높았고, 친척과 지인을 통해 초청이 용이한 점도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김판준, 2014).

#### 2. 중국동포 출입국 및 체류정책 변화

1992년 한중수교 이전 중국동포는 여권이나 비자가 아닌 여행증명서와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다. 친척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으며, 60세 이상 1세대 중국동포가 대상이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며, 홍콩을 경유하여 홍콩주재 한국영사관에서 6개월간 한국체류를 인정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올 수 있었다(김용필, 2017). 다만, 이러한 경로로 입국하는 중국동포는 현재와 비교하여 많지 않았으며<sup>1)</sup>, 한국에서는 주로 한약재 좌판 장

사를 하였다.<sup>2)</sup>

1990년 정부는 여행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토록 하였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동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미등록 신분으로 계속 단순노무분야에 일하는 중국동포도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다른 이주노동자처럼 입국규제를 시작하여 사증발급허가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며 중국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봉쇄하였다. 즉, 친척이나 고객의 초청을 원하는 한국인 및 한국기업이 정부로부터 사증발급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적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비자에만 사증발급허가서를 요구한 것에 비해, 중국동포에게는 단기체류비자에도 적용하여 입국규제를 하였다(설동훈, 1998).

한편, 1990년대 초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와 제1기 신도시 개발에 의한 건설인력 수요 증가로 국내에서는 단순노무인력이 부족하였다.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국동포도 이를 통하여 외국인력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1994년 5월 제1차 산업연수생 2만명이 입국하였으며, 연수생의 30%인 6천명이 중국동포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동포를 선호한 이유는 단순히 동포여서가 아니라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인적자본 때문이었다(설동훈, 1998).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빈발하였으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유길상 외, 2004; 임현진·설동훈, 2000).

1) 김용필(2017)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에도 국내 입국 중국동포는 한 달에 100여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이뤄지기 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2,000여명 수준이었다고 한다.

2) 중국동포들이 선물이나 용돈마련을 위해 가지고 들어온 한약들이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약재 장사로 발전하였다. 서울역 지하도 등에 삼삼오오 모여 한약재 좌판이 형성되었으며 행상들의 길이가 무려 200미터에 이르렀다. 1992년부터는 서울을 벗어나 성남의 모란시장으로 확장되었고 1993년에는 100명이 넘는 한약재 장사가 활동하였다(심의섭, 1998).

## 6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재외동포는 출입국 및 체류자격 연장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법 제정 이전에는 재외동포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위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동포로서 특별한 출입국 및 취업혜택이 없었다.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재외동포는 5년 기한의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 및 경제활동도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다. 그런데,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재외동포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당시 중국동포의 대량 유입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안보 및 외교문제를 이유로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한인을 제외한 결과였다(이창원 외, 2021). 이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및 그 직계비속,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지역 동포 등이 배제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고, 2001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3년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지속되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의 단순노무활동 취업을 금지하고,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에 거주하는 동포 대상으로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령과 지침으로 차별적인 법적용을 시행하였다. 거주국가에 따른 동포간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대상 취업관리제가 2002년 도입되었다. 서비스업 분야에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허용하였고, 방문동거 체류자격 동포에게는 제한된 범위에서 취업을 허용하였다. 취업관리제로 최장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였으며, 업종별 쿼터와 사업장 규모별로 중국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국내 노동시장, 산업별 인력수급현황,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정주화 및 내국인과의 마찰에 따른 사회적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이규용 외, 2017).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취업관리제는 특례고용허가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용허가제로 편입되었다. 재외동포는 방문동거(F1) 또는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취업관리(F1-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내에 취업할 경우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최초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이었으며, 2006년 1월부터는 제조업, 농축산업 등 1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이규용 외, 2017). 하지만, 국내에 호적·친척이 있는 중국동포만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었고, 호적·친척이 없는 중국동포는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절차는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국내 친척을 수소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고, 관광·유학·결혼 등으로 위장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유발되고 사기피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2005년과 2006년 불법체류 중국동포와 고려인을 대상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경우 1년 후 재입국과 취업이 보장되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 35,000명, 2006년 25,000명 등 약 6만명의 불법체류 동포들이 자진귀국 하였다(이규용 외, 2017).

2007년 3월 취업관리제를 대신하여 방문취업제를 실시하였다. 만 2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 및 CIS 지역 재외동포에 대해 5년 체류기한의 방문취업 복수비자(H2)를 발급하고, 비자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재외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에 대해서는 국민 등의 초청을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연고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해서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입국토록 하였다. 중국 및 CIS 지역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과 안정적인

## 8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한국체류가 가능하게 되었고, 단순노무 분야에서의 원활한 취업도 보장되었다. 또한 그 동안 취업관리제와 특례고용허가제에서는 모든 입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던 무연고 동포들에게까지 한국 입국의 길이 열렸다.

2008년에는 중국동포들에게 제한적 범위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재외동포법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 고학력자, 상공인 등 국내에서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국동포들에게도 한국 정주화의 길이 열렸다. 2009년 3월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취업한 경우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제조업 등에 장기근속한 경우 및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 경우,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한국에 정주 또는 가족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국적을 신청하고 심사대기 중이던 중국동포에 대해 국적과 동일하게 친족 초청이 가능한 영주(F5) 자격으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고액투자자, 국내기업과 교역실적이 우수한 자 및 기타 1차 산업과 제조업 등의 국내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한 동포들도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대상에 포함하였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중국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은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던 이전 정부의 시각이 변화했다는 점을 시사한다(이규용 외, 2017).

### 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체류자격 특징

방문취업제도는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국 및 CIS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2022년 현재, 18세 이상 중국과 CIS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분야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취

업허용 업종은 <표-2>와 같다.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와 친인척 연고가 없는 무연고 동포 등에 따라 비자발급 절차가 상이하다.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은 비자발급 특례대상으로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 초청으로 입국하지만,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쿼터제로 입국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총 체류인원(2022년 기준 25만명)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표-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취업허용 업종

구분	취업허용 업종 (46개 업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 어업
광업	금속광업,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 천일염 생산 및 압염 채취업, 광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상시 노동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육지 동물 및 애완동물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육상여객운송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여관업,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육탕업, 산업용세탁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자료 : 법무부(2022),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 10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방문취업(H2) 동포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지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간에서 방문취업(H2)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 친척방문으로 체류중인 동포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구직신청 이전에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입국자는 16시간(3일), 재입국자는 6시간(1일)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등이다. 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을 소개받거나 본인 스스로 사업장을 구할 수도 있다.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비전문취업(E9)과 달리 업종간 이동이 가능하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단,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영리 및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sup>3)</sup>

<표-3>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비교

구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근거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대상	·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발급	· 중국, CIS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발급
체류기간	· 제한없음 (3년 단위 계속 연장 가능)	·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 (최초 3년 체류 허가)
외국인 등록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대상 · 거소신고는 임의사항	·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상 · 90일 이상 체류시 외국인등록 의

3)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https://eps.hrdkorea.or.kr>)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

(거소신고)		무
취업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의 활동제한 범위 고시 사항 제외하고 취업가능</li> <li>· 단순노무직업 및 사행행위 등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 포1의2에 따라 46개 업종 취업가능</li> <li>· 단순노무 업종에 한해 허용</li> </ul>
취업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없음(내국인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개시, 사업장 변경 등 15일 이내 신고</li> <li>· 취업교육, 구직신청 등 외국인고용법 특례고용절차에 따라 취업</li> </ul>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2021.12.27.),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이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전에는 동포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대상이었으나 2019년 법개정 이후 세대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한국 입국 이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중국, CIS지역 등 21개 국가)의 외국국적 동포는 세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에 의한 국내 취약계층 노동시장 침해를 예방하고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1개국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는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국가의 외국국적 동포는 아래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중국동포는 주로 ②, ⑦, ⑪, ⑫, ⑭, ⑯의 경로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있다(이창원 외, 2021).

- ① 문화예술(D1) 및 취업(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12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F4-15)
-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자 직원(F4-16)
-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개발 연구원, 중급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분야 고급 기술자(F4-18)
-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F4-19)
  -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F4-20)
  -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 ⑪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F4-24)
- ⑫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 ⑬ 한중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F4-27)
- ⑮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F4-28)
- ⑯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F4-29)
  - 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F4-30)
  - ⑱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F4-9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에 따라 단순노무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다.

<표-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 범위(단순노무행위 해당 직업)

(1) 건설 단순종사원(91001)	(22) 아파트경비원(94211)
(2) 광업 단순노무원(91002)	(23) 건물경비원(94212)
(3) 하역 및 적재관련 단순종사원(92101)	(24) 그 외 건물관리원(94219)
(4) 이삿짐운반원(92102)	(25) 검표원(94220)
(5)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92109)	(26) 패스트푸드준비원(95210)
(6) 우편집배원(92210)	(27) 주방보조원(95220)
(7) 택배원(92221)	(28) 주유원(95310)
(8) 그 외 택배원(92229)	(29) 매장정리원(95391)
(9) 음식배달원(92230)	(30)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95392)
(10) 음료배달원(92291)	(31) 그 외 판매관련 단순종사원(95399)
(11) 신문배달원(92292)	(32) 산불감시원(99104)
(12) 그 외 배달원(92299)	(33) 계기검침원(99211)
(13) 수동포장원(93001)	(34) 가스점검원(99212)
(14) 수동상표부착원(93002)	(35) 자동판매기관리원(99220)
(15) 건물청소원(94111)	(36) 주차관리원(99231)
(16) 운송장비청소원(94112)	(37) 주차안내원(99232)
(17) 그 외 청소원(94119)	(38) 구두미화원 (99910)
(18) 쓰레기수거원(94121)	(39) 세탁원 및 다림질원(99920)
(19) 거리미화원(94122)	(40) 환경감시원(99991)
(20) 재활용품수거원(94123)	(41) 그 외 서비스관련 단순종사원(99999)
(21) 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94129)	

자료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영주(F5)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체류자격별로 영주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2년 이상 유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으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작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 본인명의 재산을 보유,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류실적 20억원 이상, 대한민국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 거주국 정부가 공

#### 14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경우 등이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영주(F5) 체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으면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며, 본인과 국내에서 과거 1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한다. 끝으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게도 영주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일반귀화 대상자이거나 간이귀화 대상자 또는 특별귀화 대상자여야 한다. 영주(F5) 체류자격자에게는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 Ⅲ. 서울지역 중국동포 규모와 인적 특성

#### 1. 서울지역 중국동포 규모와 비중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조금 감소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44만 7,877명에서 2019년 70만 8,082명까지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4만 7,576명으로, 2021년 61만 4,66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체류외국인 중 중국동포는 29.9%~33.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의 1/3은 중국동포인 셈이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 현황에서도 중국(중국동포)이 80.7%로 압도적 다수이며, 미국 5.5%, 우즈베키스탄 4.1%, 러

시아 3.5%, 캐나다 2.1%, 카자흐스탄 1.8% 순이다.

<표-5> 전국 체류 외국인과 중국동포 규모

단위 : 천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445	1,576	1,798	1,900	2,049	2,180	2,368	2,525	2,036	1,957
외국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동포	448	498	591	627	627	680	708	701	648	615
	(31.0)	(31.6)	(32.9)	(33.0)	(30.6)	(31.2)	(29.9)	(27.8)	(31.8)	(31.4)

자료 : 법무부(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6> 전국 중국동포 체류자격별 규모

단위 : 명, %

구분	전체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기타
2012	447,877 (100.0)	227,797 (50.9)	116,988 (26.1)	45,405 (10.1)	26,366 (5.9)	31,321 (7.0)
2013	497,989 (100.0)	228,049 (45.8)	159,324 (32.0)	56,134 (11.3)	21,996 (4.4)	32,486 (6.5)
2014	590,856 (100.0)	267,768 (45.3)	208,312 (35.3)	64,337 (10.9)	20,367 (3.4)	30,071 (5.1)
2015	626,655 (100.0)	268,123 (42.8)	241,056 (38.5)	71,306 (11.4)	18,712 (3.0)	27,458 (4.4)
2016	627,004 (100.0)	232,578 (37.1)	275,342 (43.9)	75,307 (12.0)	17,407 (2.8)	26,370 (4.2)
2017	679,729 (100.0)	212,211 (31.2)	309,987 (45.6)	78,212 (11.5)	17,026 (2.5)	62,293 (9.2)
2018	708,082 (100.0)	220,604 (31.2)	333,046 (47.0)	81,039 (11.4)	17,074 (2.4)	56,319 (8.0)
2019	701,098 (100.0)	194,792 (27.8)	346,539 (49.4)	88,888 (12.7)	17,398 (2.5)	53,481 (7.6)
2020	647,576 (100.0)	130,708 (20.2)	351,078 (54.2)	95,437 (14.7)	17,340 (2.7)	53,013 (8.2)
2021	614,665 (100.0)	107,592 (17.5)	354,539 (57.7)	101,104 (16.4)	17,136 (2.8)	34,294 (5.6)

자료 : 법무부(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16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표-6〉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체류자격별 규모 변화를 보여준다. 방문취업(H2)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감소하고, 재외동포(F4)와 영주(F5) 체류자격 중국동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방문취업(H2) 중국동포는 22만 7,797명으로 전체 중국동포의 50.9%로 과반 이상이었으나, 2021년 방문취업(H2) 중국동포는 10만 7,592명(17.5%)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재외동포(F4)와 영주(F5) 중국동포는 2012년 각각 11만 6,988명(26.1%), 4만 5,405명(10.1%)에서 2021년 재외동포(F4) 35만 4,539명(57.7%), 영주(F5) 10만 1,104명(16.4%)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중국동포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나타난 변화로, 방문취업(H2)보다는 안정적인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F4) 및 영주(F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동포의 서울지역 거주 비중은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sup>4)</sup>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은 164만 9,967명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4만 7,080명으로, 외국인의 서울 거주 비중은 21.0%이다.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할 경우, 국내 거주 중국동포는 52만 3,073명으로, 서울에 15만 8,735명이 거주하여,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은 30.3%이다. 이처럼 2021년 기준 전체 외국인의 서울거주 비중이 21.0%인데 비해,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은 30.3%로, 다른 외국인에 비해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이 높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83.4%로, 절대 다수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의 수도

4)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 통계연보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외국인주민 통계는 작성기준 및 기준일자가 상이하여 수치에 차이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지자체 외국인주민 통계는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이고,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두 통계의 '체류외국인'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동일하지 않다(법무부(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권 거주 비율 61.7%보다 21.7%p 높아, 중국동포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수도권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다만, 서울거주 외국인 중 중국동포의 비중과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012년 서울거주 외국인 34만 1,121명 중 중국동포는 20만 7,711명으로, 중국동포 비중이 60.9%였으나, 2021년에는 서울거주 외국인 34만 7,080명 중 중국동포는 15만 8,735명으로, 중국동포 비중이 45.7%로 낮아졌다. 서울거주 외국인 규모는 34만여명으로 유사하나, 서울거주 중국동포는 2012년 20만여명에서 2021년 15만여명으로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도 줄었는데, 2012년 전체 중국동포 46만 2,268명의 44.9%가 서울에 거주하였던데 비해, 2021년에는 전체 중국동포 52만 3,073명 중 30.3%가 서울에 거주하여, 2012년과 비교하여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은 14.6%p 감소하였다.

<표-7> 서울거주 외국인 중 중국동포 비중 및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거주 외국인 중 중국동포 비중	60.9	56.4	56.4	55.3	52.9	50.9	48.9	45.9	47.4	45.7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중	44.9	41.9	39.5	37.3	36.2	35.1	34.5	33.4	32.1	30.3

자료 : 행정안전부(각연도), 지자체 외국인주민 통계

## 2. 서울지역 중국동포 인적 특성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성, 연령, 학력,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인적특성에 대한 통계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과 귀화자의 한국에서 취업 및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만 15세 이상 외국인이 조사대상이다. 이에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와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와 수치가 차이가 있다.

## 18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표-8〉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성별에 따른 규모와 비중을 보여준다. 2012년 서울거주 중국동포 남성은 7만 9,457명에서 2018년 9만 6,213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 9만 842명, 2020년과 2021년에는 약 8만 4천여명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서울거주 중국동포 여성은 2012년 8만 5,217명에서 2015년 9만 1,734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8만 6,536명으로 줄었으며, 2021년에는 7만 6,396명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서울거주 중국동포 남성과 여성 비중은 2012년 48.3%, 51.7%에서 2021년 52.4%, 47.6%로 변화하였다. 즉,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면, 2016년부터는 남성 비중이 여성 비중을 넘어섰다.

〈표-8〉 서울거주 중국동포 성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12	79,457 (48.3)	85,217 (51.7)	164,673 (100.0)
2013	74,461 (48.7)	78,553 (51.3)	153,014 (100.0)
2014	86,398 (49.0)	89,804 (51.0)	176,202 (100.0)
2015	89,462 (49.4)	91,734 (50.6)	181,197 (100.0)
2016	87,662 (50.3)	86,536 (49.7)	174,198 (100.0)
2017	90,730 (51.5)	85,568 (48.5)	176,298 (100.0)
2018	96,213 (53.0)	85,406 (47.0)	181,619 (100.0)
2019	90,842 (52.9)	80,886 (47.1)	171,728 (100.0)
2020	84,515 (52.3)	77,049 (47.7)	161,565 (100.0)
2021	84,154 (52.4)	76,396 (47.6)	160,550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 서비스(MDIS),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연령별 변화도 확인하였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29세는 2012년 10.0%에서 2021년 5.5%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40~49세도 2012년 32.3%에서 2021년 16.9%로 15.4%p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서울거주 중국동포 비중은 2012년 9.9%에서 2021년 30.3%로 20.4%p 증가하였다. 즉, 15~29세 젊은 연령층, 40~49세 중년층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30~39세, 50~59세 연령층은 큰 변화없이 유사한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9> 서울거주 중국동포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15~29 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012	16,465 (10.0)	24,845 (15.1)	53,206 (32.3)	53,819 (32.7)	16,337 (9.9)	164,673 (100.0)
2013	18,117 (11.8)	26,133 (17.1)	44,508 (29.1)	46,234 (30.2)	18,022 (11.8)	153,014 (100.0)
2014	24,302 (13.8)	24,746 (14.0)	47,114 (26.7)	57,158 (32.4)	22,882 (13.0)	176,202 (100.0)
2015	24,114 (13.3)	27,117 (15.0)	36,321 (20.0)	59,625 (32.9)	34,020 (18.8)	181,197 (100.0)
2016	21,463 (12.3)	30,957 (17.8)	34,056 (19.6)	56,317 (32.3)	31,406 (18.0)	174,198 (100.0)
2017	18,779 (10.7)	25,554 (14.5)	34,854 (19.8)	59,470 (33.7)	37,640 (21.4)	176,298 (100.0)
2018	15,268 (8.4)	30,269 (16.7)	40,340 (22.2)	54,335 (29.9)	41,407 (22.8)	181,619 (100.0)
2019	14,669 (8.5)	29,289 (17.1)	31,314 (18.2)	57,170 (33.3)	39,285 (22.9)	171,728 (100.0)
2020	10,559 (6.5)	27,959 (17.3)	30,169 (18.7)	49,138 (30.4)	43,739 (27.1)	161,565 (100.0)
2021	8,856 (5.5)	25,690 (16.0)	27,070 (16.9)	50,289 (31.3)	48,645 (30.3)	160,550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20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표-10>은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학력별 분포이다. 초졸 이하는 2012년 11.3%였다가 2021년에는 16.2%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다소 비중이 증가하였다. 중졸 학력의 중국동포는 지난 10년 사이 23.1%~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 학력의 중국동포는 41.0%~51.6%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 이상은 12.7%~18.2%였다. 전반적으로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학력별 분포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대체적으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이 각각 15% 내외, 25% 내외, 45% 내외, 15% 내외를 보이고 있다.

<표-10> 서울거주 중국동포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	전체
2012	18,546 (11.3)	44,668 (27.1)	78,999 (48.0)	22,460 (13.6)	164,673 (100.0)
2013	16,426 (10.7)	38,249 (25.0)	78,940 (51.6)	19,398 (12.7)	153,014 (100.0)
2014	22,825 (13.0)	45,532 (25.8)	83,420 (47.3)	24,425 (13.9)	176,202 (100.0)
2015	22,399 (12.4)	45,158 (24.9)	82,483 (45.5)	31,158 (17.2)	181,197 (100.0)
2016	26,921 (15.5)	44,162 (25.4)	71,411 (41.0)	31,703 (18.2)	174,198 (100.0)
2017	26,543 (15.1)	45,385 (25.7)	72,275 (41.0)	32,095 (18.2)	176,298 (100.0)
2018	26,219 (14.4)	43,456 (23.9)	83,139 (45.8)	28,805 (15.9)	181,619 (100.0)
2019	24,422 (14.2)	39,615 (23.1)	78,624 (45.8)	29,067 (16.9)	171,728 (100.0)
2020	20,394 (12.6)	40,218 (24.9)	71,948 (44.5)	29,005 (18.0)	161,565 (100.0)
2021	25,964 (16.2)	39,244 (24.4)	71,226 (44.4)	24,116 (15.0)	160,550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유배우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유배우자 비율은 79.7%에서 2017년 72.7%, 2021년에는 65.8%였다. 2012년과 비교하면 2021년 유배우자 비율은 13.9%p 줄었다.

<표-11> 서울거주 중국동포 배우자 유무 및 자녀 거주지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배우자 유무			자녀 거주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자녀 모두 한국 거주	자녀 한국 및 외국 거주	자녀 모두 외국 거주	전체
2012	131,235 (79.7)	33,439 (20.3)	164,673 (100.0)	-	-	-	-
2013	119,485 (78.1)	33,529 (21.9)	153,014 (100.0)	-	-	-	-
2014	128,511 (72.9)	47,691 (27.1)	176,202 (100.0)	-	-	-	-
2015	129,902 (71.7)	51,295 (28.3)	181,197 (100.0)	-	-	-	-
2016	132,168 (75.9)	42,030 (24.1)	174,198 (100.0)	-	-	-	-
2017	128,250 (72.7)	48,048 (27.3)	176,298 (100.0)	73,564 (53.1)	16,865 (12.2)	48,083 (34.7)	138,512 (100.0)
2018	129,420 (71.3)	52,199 (28.7)	181,619 (100.0)	71,413 (50.6)	12,716 (9.0)	56,877 (40.3)	141,005 (100.0)
2019	116,534 (67.9)	55,194 (32.1)	171,728 (100.0)	71,125 (55.0)	12,815 (9.9)	45,367 (35.1)	129,308 (100.0)
2020	111,195 (68.8)	50,369 (31.2)	161,565 (100.0)	67,284 (53.9)	13,149 (10.5)	44,454 (35.6)	124,887 (100.0)
2021	105,623 (65.8)	54,927 (34.2)	160,550 (100.0)	63,186 (34.6)	14,125 (3.9)	48,222 (61.5)	125,533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자녀 거주지는 2017년 자녀 모두 한국 거주하는

## 22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경우 53.1%, 자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4.7%였는데 비해, 2021년에는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비율은 34.6%로 낮아졌으며, 자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비율은 61.5%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2021년에 이처럼 크게 변화한 건 코로나19 영향을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제한으로 자녀의 자유로운 한국입국이 쉽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12> 서울거주 중국동포 체류기간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013	2,737 (1.8)	6,216 (4.1)	35,414 (23.1)	33,070 (21.6)	51,079 (33.4)	24,499 (16.0)	153,014 (100.0)
2014	4,733 (2.7)	10,910 (6.2)	38,553 (21.9)	35,195 (20.0)	54,952 (31.2)	31,859 (18.1)	176,202 (100.0)
2015	4,959 (2.7)	7,579 (4.2)	41,947 (23.1)	28,398 (15.7)	57,850 (31.9)	40,464 (22.3)	181,197 (100.0)
2016	1,493 (0.9)	6,300 (3.6)	37,508 (21.5)	28,054 (16.1)	61,222 (35.1)	39,620 (22.7)	174,198 (100.0)
2017	826 (0.5)	4,523 (2.6)	26,272 (14.9)	43,358 (24.6)	46,741 (26.5)	54,578 (31.0)	176,298 (100.0)
2018	412 (0.2)	4,523 (2.5)	20,587 (11.3)	41,882 (23.1)	47,197 (26.0)	67,019 (36.9)	181,619 (100.0)
2019	732 (0.4)	3,616 (2.1)	18,332 (10.7)	29,061 (16.9)	47,325 (27.6)	72,661 (42.3)	171,728 (100.0)
2020	721 (0.4)	2,072 (1.3)	11,354 (7.0)	20,010 (12.4)	53,887 (33.4)	73,520 (45.5)	161,565 (100.0)
2021	187 (0.1)	454 (0.3)	10,465 (6.5)	17,546 (10.9)	51,802 (32.3)	80,096 (49.9)	160,550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체류기간별 규모는 <표-12>와 같이, 장기간 체류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6개월 미만 1.8%, 6개월~

1년 미만 4.1%, 1년~3년 미만 23.1%, 3년~5년 미만 21.6%, 5년~10년 미만 33.4%, 10년 이상 16.0%였다. 2021년에는 6개월 미만 0.1%, 6개월~1년 미만 0.3%, 1년~3년 미만 6.5%, 3년~5년 미만 10.9%, 5년~10년 미만 32.3%, 10년 이상 49.9%이다. 체류기간이 5년 미만 중국동포 비중이 2013년에는 50.6%에서 2021년 17.8%로 32.8%p 줄었으며, 10년 이상 장기체류자 비중은 2013년 16.0%에서 2021년 49.9%로 33.9%p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서울 지역 중국동포가 거의 절반인 상황이다.

#### IV.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일자리 특성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앞의 인적 특성 분석은 만 15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대상이었다면, 일자리 특성은 만 15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중 취업자가 대상이기에 차이가 있다.

##### 1. 사업체

###### 1) 산업

서울지역 중국동포가 종사하는 산업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건설업에 36.0%가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2.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9.0%, 광제조업 10.2% 순이다.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는 2.1%, 농림어업은 0.3%가 종사하고 있다. 중국동포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종사자수를 보면, 건설업 종사 비중은 2012년 28.5%에서 2021년 36.0%로 증가했으며, 반면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중은 2012년 38.1%에서 2021년

## 24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32.5%로 다소 감소하였다. 광제조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중국동포의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 비중이 변화한 건 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성별 비중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남성은 2012년 48.3%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은 52.4%였으며, 여성은 반대로 2021년 51.7%에서 2021년 47.6%로 감소하였다. 건설업은 남성이 주로 종사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특성이 있어, 서울 거주 중국동포의 성별 구성 변화에 따라 종사하는 산업 비중도 변화하였다.

<표-13>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산업별 종사자 분포

단위 : 명, %

구분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전체
2012	1,291 (1.1%)	14,852 (12.1%)	34,903 (28.5%)	46,734 (38.1%)	913 (0.7%)	23,829 (19.4%)	122,522 (100.0%)
2013	654 (0.6%)	18,046 (17.1%)	23,855 (22.5%)	40,999 (38.7%)	1,356 (1.3%)	20,917 (19.8%)	105,828 (100.0%)
2014	214 (0.2%)	15,399 (12.9%)	34,094 (28.5%)	44,477 (37.2%)	1,608 (1.3%)	23,672 (19.8%)	119,464 (100.0%)
2015	-	14,414 (11.2%)	26,314 (20.5%)	48,767 (38.0%)	1,460 (1.1%)	37,303 (29.1%)	128,258 (100.0%)
2016	221 (0.2%)	14,137 (11.0%)	36,643 (28.6%)	47,410 (37.0%)	1,029 (0.8%)	25,254 (19.7%)	124,694 (97.2%)
2017	410 (0.3%)	15,557 (12.1%)	40,859 (31.8%)	44,031 (34.2%)	1,502 (1.2%)	26,224 (20.4%)	128,583 (100.0%)
2018	341 (0.3%)	14,185 (10.7%)	44,213 (33.3%)	43,965 (33.1%)	2,986 (2.2%)	27,197 (20.5%)	132,886 (100.0%)
2019	-	13,868 (12.0%)	35,131 (30.5%)	42,013 (36.5%)	1,826 (1.6%)	22,300 (19.4%)	115,138 (100.0%)
2020	210 (0.2%)	8,738 (8.6%)	30,851 (30.2%)	36,877 (36.1%)	2,461 (2.4%)	23,018 (22.5%)	102,155 (100.0%)
2021	302 (0.3%)	10,713 (10.2%)	37,906 (36.0%)	34,233 (32.5%)	2,180 (2.1%)	19,962 (19.0%)	105,296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2) 사업체 규모

서울지역 중국동포가 근무하는 사업체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5인 미만 36.8%, 5~9인 17.7%, 10~29인 26.6%, 30~49인 4.3%, 50~299인 12.4%, 300인 이상 2.3%였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비율이 81.1%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비율은 대동소이하다. 2012년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비율은 84.8%였으며, 2015년에는 86.5%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 78.7%, 2021년 81.1%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비율은 78.7%~86.5%였다.

&lt;표-14&gt;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사업체규모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전체
2012	44,816 (36.6%)	33,584 (27.4%)	25,538 (20.8%)	6,398 (5.2%)	10,515 (8.6%)	1,671 (1.4%)	122,522 (100.0%)
2013	40,197 (38.0%)	25,888 (24.5%)	20,904 (19.8%)	8,664 (8.2%)	8,746 (8.3%)	1,428 (1.3%)	105,828 (100.0%)
2014	45,124 (37.8%)	27,871 (23.3%)	25,896 (21.7%)	7,944 (6.6%)	9,954 (8.3%)	2,675 (2.2%)	119,464 (100.0%)
2015	46,068 (35.9%)	37,626 (29.3%)	27,232 (21.2%)	9,810 (7.6%)	6,622 (5.2%)	900 (0.7%)	128,258 (100.0%)
2016	49,451 (39.7%)	32,349 (25.9%)	23,626 (18.9%)	6,423 (5.2%)	11,848 (9.5%)	997 (0.8%)	124,694 (100.0%)
2017	36,575 (28.4%)	34,319 (26.7%)	35,645 (27.7%)	8,075 (6.3%)	11,300 (8.8%)	2,668 (2.1%)	128,583 (100.0%)
2018	38,266 (28.8%)	33,270 (25.0%)	36,572 (27.5%)	6,341 (4.8%)	16,095 (12.1%)	2,342 (1.8%)	132,886 (100.0%)
2019	32,785 (28.5%)	25,356 (22.0%)	32,513 (28.2%)	6,599 (5.7%)	15,049 (13.1%)	2,836 (2.5%)	115,138 (100.0%)
2020	39,309 (38.5%)	20,506 (20.1%)	26,420 (25.9%)	4,800 (4.7%)	8,671 (8.5%)	2,448 (2.4%)	102,155 (100.0%)
2021	38,784 (36.8%)	18,590 (17.7%)	28,034 (26.6%)	4,487 (4.3%)	13,030 (12.4%)	2,370 (2.3%)	105,296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26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 3) 근무지역

서울 거주 중국동포의 근무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서울에 근무하는 비율이 65.1%이며, 경기·인천지역이 27.8%로 수도권에서 일하는 비율이 92.8%로 대다수였다. 다음으로 충청권 3.1%, 경남권 1.2%, 강원·제주 1.1%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지역 근무비율이 92.9%~96.3%로, 서울거주 중국동포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있다.

<표-15>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근무지 분포

단위 : 명,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전체
2018	89,602 (67.4%)	35,630 (26.8%)	295 (0.2%)	4,020 (3.0%)	377 (0.3%)	1,604 (1.2%)	1,359 (1.0%)	132,886 (100.0%)
2019	78,535 (68.2%)	32,374 (28.1%)	593 (0.5%)	2,267 (2.0%)	126 (0.1%)	290 (0.3%)	952 (0.8%)	115,138 (100.0%)
2020	68,454 (67.0%)	28,608 (28.0%)	603 (0.6%)	2,417 (2.4%)	-	689 (0.7%)	1,384 (1.4%)	102,155 (100.0%)
2021	68,522 (65.1%)	29,272 (27.8%)	1,260 (1.2%)	3,254 (3.1%)	893 (0.8%)	947 (0.9%)	1,148 (1.1%)	105,296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2. 일자리

### 1) 직종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직종 분포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기능·기계조작·조립직이 37.0%로 가장 많으며, 단순노무직 31.2%, 서비스·판매직 25.6%의 순이다. 사무직은 3.6%, 관리직·전문직은 2.1%에 불과했다. 2012년과 비교하여 직종별 분포가 변화하였는데, 2012년 단순노무직이 48.2%로 가장 많았으나, 2021년 31.2%로 감소하였으며, 기능·기계제작·조립직은 25.3%에서 37.0%로 증가하고, 서비스·판매직도 21.4%에서

25.6%로 증가하였다. 즉, 다수 직종인 기능·기계조작·조립직과 서비스·판매직 비율은 증가하고, 단순노무직은 감소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동포 다수가 종사하는 업종에서의 직종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의 기능·기계조작·조립직과 단순노무직 비율이 2012년 46.2%와 51.2%에서 2021년 76.7%와 23.3%로 변화하여, 기능직은 증가하고, 단순노무직은 감소하는 형태였다. 마찬가지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도 서비스직은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직은 감소하였다.

<표-16>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직종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전체
2012	2,104 (1.7%)	3,008 (2.5%)	26,252 (21.4%)	1,098 (0.9%)	30,957 (25.3%)	59,102 (48.2%)	122,522 (100.0%)
2013	2,353 (2.2%)	3,039 (2.9%)	24,399 (23.1%)	172 (0.2%)	29,568 (27.9%)	46,296 (43.7%)	105,828 (100.0%)
2014	3,343 (2.8%)	3,089 (2.6%)	27,837 (23.3%)	169 (0.1%)	37,081 (31.0%)	47,946 (40.1%)	119,464 (100.0%)
2015	3,512 (2.7%)	3,573 (2.8%)	23,443 (18.3%)	-	36,053 (28.1%)	61,676 (48.1%)	128,258 (100.0%)
2016	5,040 (4.0%)	5,139 (4.1%)	30,971 (24.8%)	221 (0.2%)	36,370 (29.2%)	46,952 (37.7%)	124,694 (100.0%)
2017	4,659 (3.6%)	4,369 (3.4%)	31,433 (24.4%)	192 (0.1%)	41,340 (32.2%)	46,589 (36.2%)	128,583 (100.0%)
2018	3,357 (2.5%)	3,980 (3.0%)	40,991 (30.8%)	203 (0.2%)	34,682 (26.1%)	49,675 (37.4%)	132,886 (100.0%)
2019	4,510 (3.9%)	2,444 (2.1%)	31,754 (27.6%)	132 (0.1%)	38,235 (33.2%)	38,063 (33.1%)	115,138 (100.0%)
2020	3,265 (3.2%)	3,141 (3.1%)	30,158 (29.5%)	135 (0.1%)	30,640 (30.0%)	34,815 (34.1%)	102,155 (100.0%)
2021	2,237 (2.1%)	3,815 (3.6%)	26,976 (25.6%)	527 (0.5%)	38,933 (37.0%)	32,807 (31.2%)	105,296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8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즉, 중국동포 다수가 종사하는 이들 업종에서 단순노무직은 감소한 반면, 기능직과 서비스·판매직은 증가하여, 직종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체류자격의 변화도 직종분포 변화의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재외동포 체류정책 변화로 방문취업(H2) 체류자는 감소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는 증가하였는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단순노무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동포가 증가하여 직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종사상지위

지난 10년간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노동자가 적게는 93.1%에서 많게는 97.6%이다. 비임금노동자는 2.4%~6.9%에 불과하여, 거의 대다수는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다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율은 변화하였다. 2012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율은 각각 36.1%, 60.1%였다가, 2015년 16.4%, 79.9%로 임시일용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상용직 비율이 2020년 28.9%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 26.1%로 다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상용직 비중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표-17>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전체
	임금노동자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2	117,861 (96.2%)	44,190 (36.1%)	73,671 (60.1%)	4,661 (3.8%)	122,522 (100.0%)
2013	103,320 (97.6%)	33,887 (32.0%)	69,433 (65.6%)	2,508 (2.4%)	105,828 (100.0%)
2014	116,267 (97.3%)	33,707 (28.2%)	82,560 (69.1%)	3,197 (2.7%)	119,464 (100.0%)
2015	123,435 (96.2%)	21,001 (16.4%)	102,434 (79.9%)	4,822 (3.8%)	128,257 (100.0%)

2016	121,003 (97.0%)	29,182 (23.4%)	91,821 (73.6%)	3,691 (3.0%)	124,694 (100.0%)
2017	123,864 (96.3%)	34,097 (26.5%)	89,767 (69.8%)	4,719 (3.7%)	128,583 (100.0%)
2018	127,079 (95.6%)	34,250 (25.8%)	92,829 (69.9%)	5,808 (4.4%)	132,887 (100.0%)
2019	108,521 (94.3%)	29,757 (25.8%)	78,764 (68.4%)	6,617 (5.7%)	115,138 (100.0%)
2020	95,091 (93.1%)	29,530 (28.9%)	65,561 (64.2%)	7,063 (6.9%)	102,154 (100.0%)
2021	99,144 (94.2%)	27,447 (26.1%)	71,697 (68.1%)	6,153 (5.8%)	105,297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3) 근무기간 및 이직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직업 및 직장 근속기간을 확인하였다.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직업 경력을 묻는 문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직장을 바꾼 것과 상관없이 현재 하는 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로, 이주노동자의 직업 경력기간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역 이주노동자의 직업 경력은 2021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5.4%, 6개월~1년 미만 3.1%, 1년~2년 미만 8.2%, 2년~3년 미만 12.1%, 3년 이상 71.1%였다. 동일직업 경력 3년 이상 비율이 2016년 57.3%에서 2021년 71.1%로 증가하여, 숙련이 쌓인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1년 미만 비율은 2016년 14.3%에서 2021년 8.6%로, 1년~3년 미만 비율은 2016년 28.3%에서 2021년 20.3%로 각각 감소하여, 3년 미만의 직업경력자 비중은 줄어들고, 3년 이상 직업경력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근속기간은 <표-19>와 같다. 2021년 기준 직장에서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 46.2%, 6개월~1년 미만 6.6%, 1년~2년 미만 12.8%, 2년~3년 미만 9.0%, 3년 이상 25.4%로, 직업경력과는 차이가 있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직장 근속기간 분포에 변화가 있는데, 6개월 미만 비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21년 크게

### 30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증가하였으며, 3년 이상 비율은 202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21년 다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결과로 추측된다.

<표-18>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직업 근무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2016	8,974 (7.2%)	8,897 (7.1%)	17,367 (13.9%)	17,959 (14.4%)	71,497 (57.3%)	124,694 (100.0%)
2017	12,107 (9.4%)	6,582 (5.1%)	15,589 (12.1%)	13,950 (10.8%)	80,355 (62.5%)	128,583 (100.0%)
2018	8,834 (6.6%)	5,868 (4.4%)	17,352 (13.1%)	13,719 (10.3%)	87,114 (65.6%)	132,886 (100.0%)
2019	7,197 (6.3%)	5,369 (4.7%)	12,641 (11.0%)	12,059 (10.5%)	77,872 (67.6%)	115,138 (100.0%)
2020	8,587 (8.4%)	5,363 (5.2%)	12,180 (11.9%)	10,764 (10.5%)	65,261 (63.9%)	102,155 (100.0%)
2021	5,735 (5.4%)	3,305 (3.1%)	8,620 (8.2%)	12,721 (12.1%)	74,914 (71.1%)	105,296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표-19>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직장 근속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2016	45,630 (36.6%)	19,184 (15.4%)	29,307 (23.5%)	14,589 (11.7%)	15,984 (12.8%)	124,694 (100.0%)
2017	48,045 (37.4%)	14,807 (11.5%)	22,177 (17.2%)	13,102 (10.2%)	30,452 (23.7%)	128,583 (100.0%)
2018	33,019 (24.8%)	14,525 (10.9%)	29,865 (22.5%)	14,966 (11.3%)	40,511 (30.5%)	132,886 (100.0%)
2019	29,109 (25.3%)	16,158 (14.0%)	24,266 (21.1%)	12,040 (10.5%)	33,565 (29.2%)	115,138 (100.0%)
2020	26,984 (26.4%)	12,438 (12.2%)	22,410 (21.9%)	10,080 (9.9%)	30,244 (29.6%)	102,155 (100.0%)
2021	48,647 (46.2%)	6,936 (6.6%)	13,472 (12.8%)	9,485 (9.0%)	26,757 (25.4%)	105,296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지난 1년간 이직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중국동포의 18.6%가 이직 경험이 있었으며, 81.4%는 이직 경험이 없었다. 2017년만 이직 경험 비율이 28.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는 17.8%~19.7%사이였다.

<표-20>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지난 1년간 이직 경험

단위 : 명, %

구분	이직함	이직하지 않음	전체
2016	22,222 (17.8%)	102,472 (82.2%)	124,694 (100.0%)
2017	36,401 (28.3%)	92,181 (71.7%)	128,583 (100.0%)
2018	24,091 (18.1%)	108,795 (81.9%)	132,886 (100.0%)
2019	22,686 (19.7%)	92,453 (80.3%)	115,138 (100.0%)
2020	19,775 (19.4%)	82,380 (80.6%)	102,155 (100.0%)
2021	19,599 (18.6%)	85,697 (81.4%)	105,296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 서비스(MDIS),

### 3. 노동조건 및 생활

#### 1) 고용계약기간

고용계약기간의 정함 여부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서울지역 중국동포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율은 2012년 60.2%였으며, 2015년 42.9%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 조사에서는 65.4%로 증가하였다. 2021년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은 34.6%였으며, 그 중에서 1개월 미만 15.2%, 1개월~1년 미만 13.1%, 1년~2년 미만 5.8%, 2년 이상 0.6%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다수는 1년 미만의 단기간

32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고용계약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2021년 기준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비율은 상용직이 77.3%, 임시일용직은 60.8%로, 상용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비율이 높았다.

<표-21> 서울거주 중국동포 임금노동자 고용계약기간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고용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고용계약기간 정함					
		전체	1개월 미만	1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2012	70,951 (60.2%)	46,909 (39.8%)	20,148 (17.1%)	15,059 (12.8%)	9,842 (8.4%)	783 (0.7%)	1,077 (0.9%)
2013	60,874 (58.9%)	42,447 (41.1%)	18,270 (17.7%)	16,056 (15.5%)	5,865 (5.7%)	1,851 (1.8%)	405 (0.4%)
2014	60,562 (52.1%)	55,705 (47.9%)	31,513 (27.1%)	19,362 (16.7%)	4,525 (3.9%)	304 (0.3%)	-
2015	53,004 (42.9%)	70,431 (57.1%)	41,653 (33.7%)	25,095 (20.3%)	2,825 (2.3%)	858 (0.7%)	-
2016	60,678 (50.1%)	60,325 (49.9%)	37,613 (31.1%)	19,341 (16.0%)	2,535 (2.1%)	583 (0.5%)	253 (0.2%)
2017	83,835 (67.7%)	40,029 (32.3%)	17,093 (13.8%)	16,450 (13.3%)	5,419 (4.4%)	770 (0.6%)	296 (0.2%)
2018	85,194 (67.0%)	41,884 (33.0%)	16,745 (13.2%)	16,098 (12.7%)	6,320 (5.0%)	1,019 (0.8%)	1,703 (1.3%)
2019	72,713 (67.0%)	35,808 (33.0%)	18,159 (16.7%)	12,299 (11.3%)	3,507 (3.2%)	1,349 (1.2%)	494 (0.5%)
2020	60,455 (63.6%)	34,637 (36.4%)	16,194 (17.0%)	11,224 (11.8%)	5,921 (6.2%)	630 (0.7%)	668 (0.7%)
2021	64,807 (65.4%)	34,337 (34.6%)	15,100 (15.2%)	12,997 (13.1%)	5,724 (5.8%)	353 (0.4%)	163 (0.2%)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 임금

2021년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월 평균임금은 100만원 미만 3.9%, 100만원~200만원 미만 24.3%, 200만원~300만원 미만 45.0%, 300만원 이

상 26.8%이다. 100만원 미만 비율은 2015년 이후 유사한 수준이지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율은 줄고, 200만원~300만원 미만 구간과 300만원 이상 구간은 그 비율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0만원 이상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22> 서울거주 중국동포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단위 : 명,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체
2015	5,388 (4.4%)	77,620 (62.9%)	34,598 (28.0%)	5,829 (4.7%)	123,435 (100.0%)
2016	5,757 (4.8%)	56,526 (46.7%)	47,219 (39.0%)	11,500 (9.5%)	121,003 (100.0%)
2017	4,365 (3.5%)	43,634 (35.2%)	54,676 (44.1%)	21,189 (17.1%)	123,864 (100.0%)
2018	2,793 (2.2%)	35,051 (27.6%)	68,297 (53.7%)	20,937 (16.5%)	127,079 (100.0%)
2019	4,992 (4.6%)	27,728 (25.6%)	51,342 (47.3%)	24,458 (22.5%)	108,521 (100.0%)
2020	3,512 (3.7%)	25,227 (26.5%)	48,511 (51.0%)	17,841 (18.8%)	95,091 (100.0%)
2021	3,853 (3.9%)	24,071 (24.3%)	44,604 (45.0%)	26,615 (26.8%)	99,143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3) 노동시간

2021년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20시간 미만 4.2%, 20~30시간 미만 6.6%, 30~40시간 미만 9.0%, 40~50시간 미만 48.4%, 50~60시간 미만 11.8%, 60시간 이상 20.1%이다. 주당 5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중국동포 비율이 2016년 55.9%에서 2021년 31.7%로 감소하였으며, 40~50시간 미만 비율은 2016년 34.1%에서 2021년 48.4%로 증가했다. 이처럼 50시간,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

### 34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율은 줄면서, 전반적으로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3> 서울거주 중국동포 취업자 주당 평균노동시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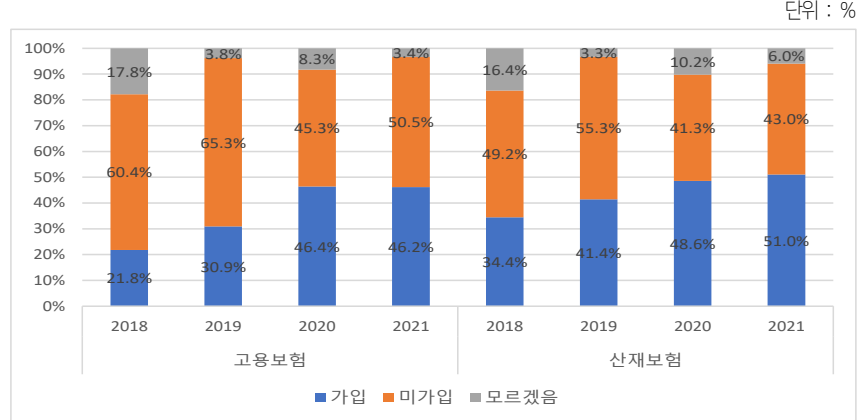
구분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일시휴직	전체
2016	2,183 (1.8%)	5,066 (4.1%)	4,813 (3.9%)	42,274 (34.1%)	23,056 (18.6%)	46,671 (37.6%)	630 (0.5%)	124,694 (100.0%)
2017	2,811 (2.2%)	3,382 (2.7%)	7,994 (6.3%)	49,900 (39.1%)	22,616 (17.7%)	40,838 (32.0%)	1,042 (0.8%)	128,583 (100.0%)
2018	1,802 (1.4%)	4,976 (3.8%)	7,834 (6.0%)	52,183 (39.8%)	16,924 (12.9%)	47,428 (36.2%)	1,738 (1.3%)	132,886 (100.0%)
2019	4,248 (3.7%)	5,587 (4.9%)	8,744 (7.7%)	51,280 (44.9%)	19,171 (16.8%)	25,261 (22.1%)	847 (0.7%)	115,138 (100.0%)
2020	4,405 (4.4%)	7,830 (7.8%)	8,784 (8.8%)	46,763 (46.8%)	12,622 (12.6%)	19,494 (19.5%)	2,257 (2.2%)	102,155 (100.0%)
2021	4,388 (4.2%)	6,945 (6.6%)	9,479 (9.0%)	50,894 (48.4%)	12,393 (11.8%)	21,131 (20.1%)	463 (0.4%)	105,693 (100.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4) 사회보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8년 21.8%에서 2019년 30.9%, 2020년 46.4%, 2021년 46.2%로 증가하였으며, 산재보험 가입률도 2018년 34.4%에서 2021년 51.0%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18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줄어든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각각 50.5%, 43.3%로 높아 지속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림-1] 서울거주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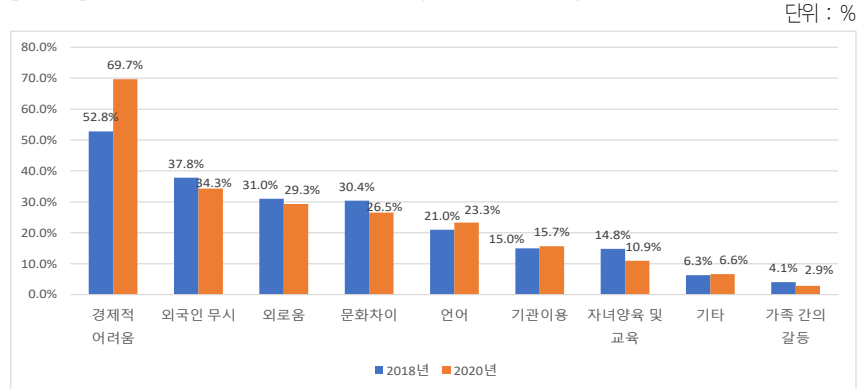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5) 한국생활 어려움

서울지역 중국동포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은 [그림-2]와 같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1, 2, 3순위로 선택한 답변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2018년과 2020년 모두 순위가 동일하다.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무시, 외로움, 문화차이, 언어, 기관이용,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순이었으며, 2020년 조사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선택하였다.

[그림-2] 서울거주 중국동포 한국생활 어려움(1+2+3순위 합계)



자료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V. 결론

우리나라는 해외취업이 활발한 노동력 파견국가였다가 1980년대 말 중국동포의 유입과 함께 우리나라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시작되어 노동력 유입국가로 전환되었다. 친척방문 형태로 들어온 중국동포는 한국과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변화로 한국을 방문하다가 국내 건설업계의 극심한 인력난으로 취업기회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이혜경, 2011).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다수 중국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2002년 취업관리제를, 2007년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재외동포(F4) 및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하면서 중국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외국인력정책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은 중국동포로 규모가 증가하고 체류자격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체류기간과 취업활동에 유리한 체류자격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중국동포의 국내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활동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체류정책 변화에 따라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증가하나, 중국동포의 서울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서울거주 외국인 중 중국동포 비중도 감소하였다. 다만, 여전히 중국동포 중 서울에 거주하는 비중은 30.3%이고, 서울거주 외국인의 45.7%는 중국동포로 다수의 중국동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남성 중국동포 비중은 증가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즉,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인적특성은 남성, 고령층, 장기체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적 특성 변화에 따라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일자리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남성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설업 종사 비중이 늘어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중은 감소하였다. 직종 변화도 확인되는데, 기능직은 증가하고, 단순노무직은 줄고 있다. 이는 체류정책 변화에 따라 방문취업(H2) 체류자는 감소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는 증가하면서 직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종사상지위와 관련해서는 전국보다 서울이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임시일용직 비율이 60.1%~79.9%로, 중국동포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편중되어 종사하고 있다. 직업경력은 3년 이상 숙련자의 비중이 늘고, 노동시간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각각 50.5%, 43.3%로 높은 편이다. 한국생활 어려움으로 중국동포는 경제적 어려움을 10명 중 7명이 선택하였고, 이전조사보다 크게 상승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았다.

취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다른 외국국적 이주노동자와 달리 중국동포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며 정주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장기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편이다(곽재석, 2021). 중국동포의 정주화와 고령화는 이번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서울지역 통계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에 거주하기에 돌봄, 교육, 주거, 의료 등 생활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한편으로는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대와 역차별 논란 등으로 내국인과 중국동포간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동포의 생활안정과 사

### 38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회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노동실태 및 생활실태 변화를 확인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중요하다.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에 귀속감을 갖고,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곽재석(2021), 국내 동포 밀집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재외한인연구, 55
- 구지영(2013), 지구화시대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에 관한 소고: 중국 청도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8
- 권태환(2005), 사회적 환경과 조선족의 정체성,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향숙(2012),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 김기태·곽윤경·이주미·주유선·정기선·김석호·김철호·김보미(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필(2017), 이주의 역사: 재중동포 이주 30년, 거주 70만, 견고싶은도시 제93호
- 김판준(2014), 중국동포의 한국이주 및 체류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32
- 김현미(2008), 중국 조선족의 영국 이주 경험: 한인타운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2)
-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 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2022.2.),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 법무부 보도자료(2021.12.27.),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 법무부(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설동훈(1998),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의 원인과 대책, 피해자학연구
- 심의섭(1998), 연변조선족 '코리아 드림'의 전개와 성과, 경제논집, 17(2)
- 오정은·김경미·송석원·문민·김혜명(2016),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조사, 재외동포재단
- 유길상·이규용·이해춘·조준모·노용진·김현구·박의경(20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윤자호(2022), 중국동포 노동실태 -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178호

#### 40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 이규용·곽재석·박성재·주수인(2017), 동포 외국인력정책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이진영(2004),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인간이주와 인간안보: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원 편, 9.11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한, 오름출판사
- 이창원·최서리·권채리·박미화·조하영·이도운(2021),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에 대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 이혜경(2011), 한국 이민정책사, 정기간 역음, 이민정책 연구총서1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 임현진·설동훈(200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고용노동부
- 통계청 보도자료(2022.4.14.), 2021년 장계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 통계청(각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행정안전부(2020), 참고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와 차이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자체 외국인주민 통계
- 허명철(2012), 조선족 정체성 담론, 중앙사론, 36
-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https://eps.hrdkorea.or.kr>)